

기안용지

문서번호 등록번호	회계181.5-	(전화번호)	전송구분	문서 전달사항
처리기간	84.1.	시장		
시행일자	84.1.	216		
보존여부	영구	216		
보 부 시 장	011-639-1000 기획관비실장	법무담당관	심사필	
재무국장	011-639-1001 예산과장	판비 계장		
회계과장	011-639-1002 회계과장	계약 계장		
기한 및 일자 회계집사기장 회계증	84.1 (집행일)	제출기장		
정부	발	통		
수신	작안찰조	신	폐	
참조				
내부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휘급 규정 개정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0627호)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02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휘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조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휘급 규정 개정(안) 1부. 끝.

정부

제2안

수신 공보관

발신 : 재무국장

제목 회계사무 휘급 규정 개정사항 시보개재 의뢰

정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84.1.)에 의거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휘급 규정 개정사항을 시보에 개재보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휘급 규정 개정 1부. 끝.

발송

서울특별시회계사사무처 금융정책기획(안)

2012년 10월 10일



1.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627호)과 예산
회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0212호) 및 회계예규 1201.04-105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상가격 작성준칙)호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사부 취급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0. 물품관리관 - 총괄물품관리관

0. 3급공무원 - 5급공무원(공무원 직급변경)

0. 회계예규 변경에 따른 관립 조문 변경

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립 조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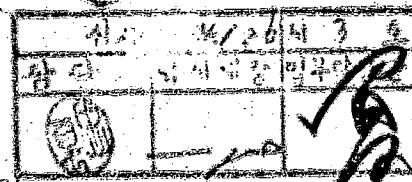
0. 기구개편에 따른 재명칭 변경

회계 1, 2과 -- 회계과



서울특별시 예금 제

호



서울특별시 회계사무부 취급규정통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처금 규정통 내용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주관과장"을 각기관 물품관리관 (본일물품관리관)으로 "물품관리관"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3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제3호 단위통 "(회계예금 1201.04-80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증치
제5호내지 제8호)"를 "(회계예금 1201.04-105-2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증치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제10호 및 제18호"를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호통 "회계1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회계2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전토자금의 정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전토된
자금은 전토자금출납원 (임시전토자금출납원) 청탁하여 집행하고 월 5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품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다.

회계사 부회 금류 청개정 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 설정) ② 투관과장을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의 물품수 급관리계획서를 떠로 지정된 기일이 없는 때에는 매회 계년도 개 시전까지 물품관리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 설정) ② 각기관 물품관리관(본임 물품관리관)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총괄 물품관리관" 신설
제6조(계약입사) ② 전항의 경우 상급관청 중앙부서 또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송인이나 협의의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계약입사 요구전에 주관국 과장이 송인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입사) ② 제1항의	용어정비 

현 향	개 정 (양)	개 정 사 유
제7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② 경비관(분임경비관)은 <u>진행회</u>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급(납품)기 한, 연기회복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② 경비관(분임경비관)은 제1항 의 -----	용이 청탁
제10조(물품구매설사위원회의성)제10조(물품구매설사위원회의구성) ① 물품구매설사위원회(이하 "설사위원회"라한다.) 는 본장에서는 국별로 청·소(3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단위 기관별로 구성한다.	① ----- ----- (5급공무원) -----)	공무원직급변경
제12조(구매요구) 3. 제조, 가공품 다. 원가계산서로 작성된 내역서 (회계예규1201.04-8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각각각성 준칙 제5호	제12조(구매요구) 3. 제조가공품 다. 원가계산서로 작성된 내역서 (회계예규1201.04-105-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각각성 작성 준칙	회계예규변경 178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내지 제8호)	제5호 내지 제12호)	
제14호 (예정가격 조서작성) ② 예산회 계법 시행령 제112 호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8호 에 해달하는 사항일 때는 예정가격 조서의 작성을 상략하고 주관국, 과의 산출기초조사서에 의거 산출서만 작성한다.	제14호 (예정가격 조서작성) ② 예산회 계법 시행령 제112 호 제1항 제4호 내지 제8 호에 해달하는	예산회 계법 시행령 제 112호 총 제10호 및 제18호 삭제
제15조 (예정가격의 결정) 경비관 (분임경비관) 이에 산회 계법 시행령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16 호의 2, 제116호의 4, 제 117호 및 계약사무처리 규 칙) 제5호 내지 제8호 규 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국, 과장이 작성한 산출기 초조사서와 회계과 (계약	제15조 (예정가격의 결정)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을 담당하는 곳)에서 재화인 작성한 예정가격표서에 의하 여 결정한다.	()	
제1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를 기술학, 전문 적인 수량·최정과 단가와 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u>회계과</u> (계약을 담당하는 곳)의 관계공무원이 각각 그 책 임을 진다.	제1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u>회계과</u> ()	기구기준에 따른 명칭 변경
제19조(시설공사시행) ② 전항의 규정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 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관급 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 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공사시행) ② 제1항과	용어정의 

현 향	개 칭 (안)	개 칭 사 유
제26조(월별자출계획서작성) ② 주관과장은 전항의 계획서 에 의한 매월 보상비자출소요 액을 그전월 20일까지 차출 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월별자출계획서작성)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 에	용어 정의
제27조(개산금, 선급금, 전토 자금의 차출) ① 개산금, 선급금 및 전토자 금을 차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관(본임경비 관) 및 회계2과장(차출을 담당하는 과의 장)과 협의 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산금, 선급금, 전토자금 의 차출) ①	기구기편에 따른 명칭 변경
② 전항 규정의 차출질의서 상단에는 개산금, 선급금, 전 토자금통의 구분을 표시(고 루인)하여야 한다.	회계과장 ③ 제1항	용어 정의 <i>A 25</i>

한 험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28조 (전 토자금의 정산)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u> <u>규정에 의하여 전 토원</u> <u>자금을 집행한 후 그 정산</u> <u>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u> <u>여야 한다.</u></p>	<p>제28조 (전 토자금의 정산)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u> <u>규정에 의하여 전 토원 자</u> <u>금은 전 토자금출납원(입사</u> <u>전 토자금출납원) 책임하에</u> <u>집행하고 익월 5일까지</u> <u>정산하여야 한다.</u></p>	<p>1) 국비전 토자금의 경우 집행월료시 정산서를 지출원 에게 제출하지 않 고 있으며</p> <p>2) 전 토자금출납원 및 입사전 토자금출납 원도 회계과공부원 이므로 지출원이 전 토자금(입사전 토 자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주후 시정 이 불가함.</p>